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<h1>공 보</h1> <p>http://www.daedeok.go.kr</p>

제2018-76호
2018. 10. 8.(월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공 고(2)

-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(공고 제2018-754호)1
-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(공고 제2018-755호)3

공									
람									

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

대전광역시고시 제2017-85호(2017.5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청회 개최 목적

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

2. 공청회 일시 및 장소

가. 일 시 : 2018년 10월 23일(수) 13:30~15:20

나. 장 소 : 신탄진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

3.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개요

가.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주민재산권 행사제약의 해소를 위해 석봉2구역 등 5개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

- 나. 신탄진동 137-5번지에 위치한 안골 어린이 공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현지 여건에 부합토록 문화공원으로 유형 변경 등
- 다. 석봉C, 신탄진A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을 기존 6m, 5m를 동일하게 3m로 조정
- 라. 신탄진 B·C·D·E구역의 상업지역 용적률을 400%에서 1,100%로 조정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공청회 개최 일까지 의견서를 대덕구청 도시과(팩스 042-608-3841)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덕구청 도시재생담당(042-608-539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, 『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한 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·단체·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규모	보육 정원	특수보육	비 고
오정어린이집	대전로1066번길52(오정동)	292.42㎡	48명	영아전담	
새뜸어린이집	한남로137번길29(오정동)	824.09㎡	99명	시간연장	
회덕어린이집	대전로1376(회덕동)	150.06㎡	47명	시간연장	

2. 위탁기간 : 2019.01.01 ~ 2023.12.31(5년)

3. 신청자격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법인
- 단,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.

-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.

※ 신청자격 제외대상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
-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등
-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, 단체, 개인
- 단체, 개인위탁 신청자일 경우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
-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4. 위탁조건

- 종사자 승계 :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신규 수탁 법인은 승계 하여야 함.
-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, 영유아보육법, 보육시설 운영지침,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
-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○○어린이집 위탁관리·운영 협약서」에 의함.

5.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18. 10. 8. ~ 2018. 10. 28.(20일간)
- 접수기간 : 2018. 10. 29. ~ 2018. 10. 31(3일간)
 ※ 접수시간은 근무시간(09:00~18:00) 한함
- 접수장소 : 대덕구청 여성가족과(☎042-608-6971)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접수(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)

6. 제출서류

- 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

- ② 인감증명서(어린이집 위탁신청용)
 - ③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
 - 이사회 회의록(결의서) 사본 등 의결기구 결정사항 첨부
 - ④ 원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, 이력서 및 경력 증빙서류
 - ⑤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형성)
 - 부동산(등기부등본 첨부)
 - 아파트, 다세대, 연립 :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
 - 단독주택 : 주택가격확인원
 - 상가, 기타 : 세목별납세증명서(비고란 과표 기록)
 - 토지 : 공시지가확인원
 - 동산(정기예금만 인정,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)
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)
 - 부채증명서(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)
 - ⑥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
 - ⑦ 위탁운영체 기본현황(법인, 단체 및 개인)
 - ⑧ 법인·시설 운영실적('17 ~ '18년)/('17년 결산보고서 첨부)
 - ⑨ 어린이집 운영 이행각서(대표이사 및 원장)
 - ⑩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(학위논문제외)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
 - ⑪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
 - ⑫ 국·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제출자료(총괄표)
- 제출부수 : 신청서 14부(원본 1부, 사본 13부), 요약서 14부
-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권의 책자로 제본하고 페이지 표시 제출(순서에 따라 간지 부착)
- 제출서류의 발급기준일을 모집 공고일 이전으로 하며, 서류접수 후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.
- ※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대덕구청 페이지(<http://www.daedeok.go.kr>) 게시 다운로드 받아 사용**

7. 선정방법

- 심의위원 :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

○ 선정기준

심 사 항 목	항목별 점수
1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
2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
3. 운영체의 운영실적	10
4. 운영체의 공신력	10
5. 운영체의 재정능력	5
합 계	100

○ 선정방법 :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

- 최고점수가 2인 이상 동점자일 경우의 선정
(사회복지법인 ⇒ 비영리법인 ⇒ 단체 ⇒ 개인 순으로 선정)
- 단독 신청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선정자로 결정
-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10분,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, 설명은 법인대표 또는 어린이집 원장 예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
- 심사위원의 「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」 한 평균 70%이상 점수를 얻은 위탁신청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가 협약 대상 1순위이며,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

○ 수탁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위탁운영법인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결정 후 수탁운영자 개별통지

8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합니다.
- 위탁관련 사전설명회는 없으며, 신청하는 위탁체는 모집공고, 협약서, 관계법규 및 위탁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, 미숙지 또는 미확인 및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대덕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.
-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릅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.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-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탁조건에

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지정일까지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선정을 무효로 하며, 차순위자와 협약을 합니다.

- 신청자별로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,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합니다.
-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대덕구와 위·수탁협약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**☎ 042)608-6971**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